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제48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류	경계관제	공습관제
1. 일반 옥외 등	가. 광고등류 광고등·간판등·장식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소등	소등
	나. 표지등류 1) 병원 표지등, 경찰 표지등, 소방관서 표지등 및 대피시설 표지등 2) 그 밖의 시설물 표지등	평상시와 같음 소등	소등 소등
	다. 가로등류 가로등·교량등·공원등·보안등·공중전화부스등 및 출입구등 등과 같은 문전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소등	소등
	라. 옥외 다중(多衆) 집합장소등류 운동경기장, 야외극장, 집회용 광장 등(等)의 조명등	소등	소등
	마. 옥외 작업등류 1) 작업장 표시등 2) 작업등	소등 소등 또는 차광	소등 소등
	바. 노점등류	소등	소등
2. 일반가정 옥내등	가. 실내등	소등. 다만, 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1가구 1등에 대하여만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소등. 다만, 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1가구 1등에 대하여만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나. 정원등 및 현관조명등	소등	소등
3. 피난유도	피난유도등·화재경보등	평상시와 같음	완전 차광으로

등·화재경보등			빛이 새는 것을 방지
4. 특수시설 옥내등	가. 관공서·공공기관 및 국가보안시설 1) 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통신실, 방송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 2) 그 밖의 등	차광 소등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소등
	나. 병원 등 의료시설 1) 응급환자처치실, 중환자실, 수술실, 통신실, 전기·수도·가스·공기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 2) 그 밖의 등	차광 소등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소등
	다. 사무용 및 복잡다기능 대형 건축물 1) 상황실, 교환실, 통신실, 방송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 2) 그 밖의 등	차광 소등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소등
	라. 공장 1) 공장장실, 상황실, 통신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야간조업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특수실의 등화 2) 수위실·경비실의 등화 3) 외곽 경계 표지등, 경비등 4) 그 밖의 등	차광 차광 소등 소등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소등 소등 소등
	마. 호텔 등 숙박업소 1) 상황실, 통신실, 전기·수도·가스공급실 및 그 밖에 꼭 필요한 야간집무실의 등화 2) 그 밖의 등	차광 소등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소등
	바. 상점 및 점포		

	1) 진열장 조명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소등	소등
	2) 그 밖의 등	소등	소등
	사. 학교·학원·도서관등		
	1) 숙직실등	차광	소등 또는 완전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2) 교실·열람실·교무실의 등화	소등. 다만, 야간수업 중 또는 열람 중인 경우에는 차광할 수 있음	소등
	아. 유흥업소·실내경기장·실내공연장·오락장·무도장 등	소등 또는 차광	소등
	자. 그 밖의 시설의 실내등	소등. 다만, 필수등은 차광할 수 있음	소등
	5. 일반교통 관제등화		
	가. 교통 신호등류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평상시와 같음	소등
	나. 자동차등류		
	1) 전조등	소등. 다만, 최대 조도(밝기) 5럭스 이하의 비상조명등은 점등할 수 있음	소등
	2) 후퇴등·차폭등·번호등·미등·제동등·방향지시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평상시와 같음	소등
	3) 차내등	소등. 다만, 버스의 승강구등만은 점등할 수 있음	소등
	다. 승객대기실등	소등. 다만, 최소 필요등만은 차광할 수 있음	소등

6. 철도관계 등화	가. 신호등류 정차장 진입등 및 진출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각종 신호등	평상시와 같음	소등
	나. 표지등류 지상 표지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소등. 다만, 정 차장 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필수등은 일시 점등할 수 있음	소등
	다. 차량등류 1) 전부(前部) 표시등, 후부 표시 등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2) 차내등	평상시와 같음 소등. 다만, 객 차에 한하여 1 칸 4등 이내의 등은 차광할 수 있음	소등 소등
	라. 대기실이나 그 밖의 역부대시 설의 실내등	소등. 다만, 최 소 필요등은 차 광할 수 있음	소등
7. 선박관계 등화	가. 표지등류 1) 유도등, 안전관계 표지등 2) 항로표지등 3) 부두시설물 표지등류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소등. 다만, 부 두 입·출항이 불가피한 경우 필수등은 일시 점등할 수 있음 평상시와 같음 소등	소등 소등 소등
	나. 선등류 1) 선박표지등 2) 선실 외 조명등	평상시와 같음 소등. 다만, 부 두 입·출항이 불가피한 경우	소등 소등

	3) 선내등	필수등은 일시 점등할 수 있음 소등 또는 차광	소등
	다. 부두대기실 및 부두시설물의 실내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소등. 다만, 최 소 필요등은 차 광할 수 있음	소등
8. 항공관계 등화	가. 표지등류 1) 항공 표지등류 항공등대의 항공장애물 표지등 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2) 비행장등류 착륙구역 조명등, 진입등, 점지 대등, 활주로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등화	평상시와 같음 소등. 다만, 항 공기 이·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 시간 에만 최소 필수 등을 일시점 등할 수 있음	소등 소등. 다만, 항 공기 비상착륙 이 불가피한 경우 착륙 시 간에만 활주로 등을 일시점 등할 수 있음
	나. 항공기등류 1) 착륙등, 정박등, 미등, 좌우의 등, 기수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공기 부착등화 2) 실내등	소등. 다만, 항 공기 이·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 시간 에만 최소 필수 등을 일시점 등할 수 있음 소등 또는 차광	소등. 다만, 항 공기 비상착륙 이 불가피한 경우 착륙등의 경우에만 일시 점등할 수 있 음 소등
9. 그 밖의 화염류	용광로화염·평로화염·전기로화염· 정유시설과 가스배출연소화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화염	은폐 또는 소광. 다만, 시장·군 수·구청장이 지 정한 최소한의 화염류는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음	